2026. 1.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안내

보 건 복 지 부

목 차

Ⅰ. 인권교육 개요 ····· 1

Ⅱ. 인권교육 내용 및 강사 조건 ····· 4

1 인권교육 종류 ····· 4

2 교육내용 ····· 5

3 교육방법 ····· 6

4 인권교육 강사 조건 ····· 6

Ⅲ. 운영방법 ····· 7

1 시설장 인권교육 ····· 7

2 종사자 인권교육 ····· 8

Ⅳ. 인권강사 교육 ····· 11

1 인권강사 양성교육 ····· 11

2 인권강사 보수교육 ····· 13

Ⅴ. 인권교육 지정교육기관 ····· 14

1 인권교육 지정교육기관 역할 ····· 14

2 인권교육 지정교육기관 지정 · 운영 ····· 17

3 지정교육기관 모니터링 ····· 17

Ⅵ.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의무와 역할 ····· 18

Ⅶ. 기타사항 ····· 19

Ⅰ 인권교육 개요

1 목 적

○ 인권교육을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인권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향상

○ 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정보와 가치, 인권을 옹호하는 태도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여 인권문화를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인권침해 감소를 통해 정신장애인을 보호

2 관련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3 의무교육 적용대상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의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종사자

- 정신의료기관은 1병상 이상을 보유한 정신병원, 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이며, 1병상 이상 낮병동을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도 포함됨

4 인권교육의 기본내용

○ 정신장애인의 인권 및 권익보호

○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관련 법령 및 제도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보호에 관한 국제 동향

○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5 수행체계



○ **기관별 역할**

1) 보건복지부

- 정신장애 인식개선 및 편견 해소 정책의 종합계획 수립·조정·평가
- 중앙단위 정신장애 인식개선 및 편견 해소 정책 추진
-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 강화 제도 운영
-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위탁 운영 및 관리

2) 시·도 및 시·군·구

- 지역사회 내 정신장애인 인권 및 권익 보호
- 인권교육 일정 홍보 및 의무 이수 안내
- 인권교육 결과 취합 및 보고
- 인권교육을 위한 시설편의 및 강사지원

3)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교육 지침 수립 지원
- 인권강사 양성, 강사 관리, 보수교육 운영
- 사이버 인권교육 개발 및 운영
- 지정교육기관 인권교육 지원 및 실적 관리
- 인권교육 표준 강의안 개발·배포

4) 지정교육기관

- 지역사회 중심 인권교육 연간계획 수립·수행·관리
- 교육 수료증 발급 및 관리
- 인권강사 추천 및 관리
-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 실적 보고

5) 정신건강증진시설

- 인권교육 이수
- 시·군·구에 교육 이수 결과 보고

Ⅱ 인권교육 내용 및 강사 조건

1 인권교육 종류

○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은 시설장과 종사자 대상으로 구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구분	교육 대상	교육방법			교육기관	
		집합	방문	사이버		
시설장 인권 교육	정신건강증진 시설 장	○	×	×	정신의료기관	- 국립정신병원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재활시설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정신요양시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협업)
종사자 인권 교육	정신건강증진 시설 종사자	○	○	○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집합, 방문) 권역 지정교육기관 (사이버)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정신인권 교육홈페이지(hrp.kohi.or.kr) 또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교육 홈페이지(www.ncmh.go.kr:2450/home/main.do) 공지사항에서 교육대상 및 교육일정 확인 후 교육 이수 (P10 참고)** - (의료진) 당해연도 짝·홀수와 종사자 출생연도를 대입하여 집합(실시간)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이수 - (행정분야, 조리실, 시설관리 등 진료 관련 부서 외 종사자) 출생연도 관계없이 사이버 교육 이수
					정신재활시설	한국보건복지인재원(hrp.kohi.or.kr) 또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교육 홈페이지(www.ncmh.go.kr:2450/home/main.do)에서 공지사항에서 교육대상 및 교육일정 확인 후 교육 이수

2 교육내용

○ 교육내용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50조에 규정된 인권교육의 내용을 반영하여 인권알기, 인권사례, 인권실천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하되, 교육기관이 인권교육에 적합한 교육내용과 다양한 교육방법을 적용하여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음

구 분	교 육 내 용
인권알기	《인권의 이해와 인권 감수성 훈련》 • 인권의 이해: 인권·권리의 개념과 이해, 역사(세계사), 인권 기반·인간 중심·회복 지향 서비스 등 •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내외 기준: 장애인권리협약, QualityRights(WHO),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가이던스(WHO), 장애인차별금지법, 정신건강복지법 등 • 인권교육의 필요성 및 인권에 대한 감수성 훈련
인권사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인권보호(인권회복) 사례》 • 국내·외 정신질환자의 인권 현황(사회적 배제 등)과 주요 쟁점 •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의 인권침해 경험 사례 및 인권보호(인권회복) 사례 •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의 인권보호 실천 사례(비교 분석 등)
인권실천	《인권보호를 위한 실천》 • 정신건강복지법의 인권보호 제도: 환자의 기본권, 입·퇴원 절차, 격리·강박, 비밀보장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 내에서 실천 가능한 인권보호 방안(비강압 치료, 선택권 보장, 정보 접근권 강화 등) • 사람 중심, 회복과 권리 기반의 정신건강서비스 실천 • 동료지원가 양성 및 활동지원, 동료지원쉼터
기타	•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등 •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한 다분야 협력 교육 •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낙인 해소를 위한 전략·실천 사례 등

3 교육방법

○ 교육지정기관은 교육 요구에 따라 집합교육, 방문교육, 사이버교육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집합교육)** 지정교육기관이 교육이 가능한 일정을 정하여 교육 참여자를 모집하여 운영하는 집합교육(**※비대면 라이브교육 포함**)
- **(방문교육)** 인권교육을 받고자 하는 기관에서 지정교육기관에 사전 방문을 요청하여 지정교육기관 주관으로 실시되는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사이버공간을 통해서 상시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 집합교육, 방문교육으로 실시할 경우 강의식 교육이나 토론 등 교육대상자가 직접 참여하는 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인권 영화 상영 후 토론, 역할극, 인권보호 우수기관 현장 방문 등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 교육 대상에 따라 교육난이도를 구별하여 특화교육, 심화교육을 운영할 수 있으며 직종을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음

4 인권교육 강사조건

○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강사양성·보수 과정을 이수한 자

○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강사

○ 지정교육기관 재량에 의해 추천된 특별강사(해당 분야의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제1호 가, 라, 마의 기관 및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병원(국립공주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은 자체 기준에 따라 강사를 추가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정신장애인가족 및 당사자 등 인권교육 강사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Ⅲ 운영방법

1 시설장 인권교육

○ **교육대상: 정신건강증진시설 장**

- 시설장이 연간 진행되는 교육 실시기간에 공석인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해당연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정신의료기관 중 병원급 이상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장을 시설장으로 보며, 정신건강의학과장이 여러명인 경우 수석 정신건강의학과장을 시설장으로 봄

  * 지정교육기관 교육 담당자는 교육대상 자격 확인 후 수강 승인해야 함

- 당해연도 11월~12월 신규 채용자는 익년 3월까지 인권교육(집합 또는 사이버)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익년도에 총 2회의 교육을 이수해야함
- (교육신청 유의사항) 정신건강증진시설 유형별 시설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 시설장 교육으로 인정

  * 종사자 교육을 이수하거나, 타 유형의 시설장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교육기관 표 참고)

○ **교육시간 및 방법**

- 교육시간: 4시간
- 교육방법: 집합교육

○ **교육신청 방법**

- 지정교육기관 교육일정 확인 후 기관별 신청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정신인권 교육홈페이지(hrp.kohi.or.kr) 공지사항을 통해 지정교육기관별 교육 일정 확인 가능

○ **교육기관**

- 정신의료기관 시설장은 국립정신병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교육을 실시함
- 정신재활시설장은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에서, 정신요양시설장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와 협력하여 실시

연번	정신건강증진시설	교육기관
1	**정신의료기관**	• 국립정신병원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	**정신재활시설**	•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3	**정신요양시설**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협업)

2 종사자 인권교육

○ **의무교육대상: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사자**

-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는 인권교육 의무대상임
- **(정신의료기관)** 1병상 이상을 보유한 정신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조무사, 보호사, 행정, 원무, 관리 전담 직원 등 직접 고용된 직원은 의무교육 대상임

[의무교육 대상 범위]

▪ **정신병원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모든 직원**
- 직접 고용된 직원인 경우, 담당업무를 불문하고 모든 직원이 교육 대상임
- 정신병원 내 타과 근무자(예: 치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내과 등)도 교육 이수 의무자에 포함
- 식당, 청소, 경비, 운전 등 비 치료 분야 종사자도 인권교육 이수를 해야 함

▪ **병원급 이상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모든 직원, 인사·재무·원무·심사·시설 등 진료지원부서 관리자 2명 이상**
- 단, 소속은 발령을 기준으로 하며, 업무지원 등의 사유로 원소속과 달리 한시적으로 타과에서 근무하더라도 인권교육 이수를 해야 함
- 타 과 소속이나, 업무지원 등의 사유로 한시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 근무하는 경우 의무교육 대상은 아니나, 인권교육 이수를 권장하며 기관장 재량에 따라 실시함

-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시설 근무 전 직원
-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자는 법정 의무교육 대상은 아니나 인권교육 이수를 권장하며, 기관장 재량에 따라 실시함
-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실습 중이거나 자원봉사 등의 목적으로 근무하는 직원 외 근무자나 용역직원도 기관장 재량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교육기관: 지정교육기관**

* 【붙임3】 인권교육 지정교육기관 현황 참고

○ **교육시간: 4시간**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지정교육기관의 '집합교육'에 참석하여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정교육기관이 공지한 인권교육 일정에 맞춰 직접 사전 신청 후, 교육에 참여
- **(방문교육)** 방문교육이 필요한 정신건강증진시설에는 사전에 지정교육 기관에게 방문교육을 요청하여 해당 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반드시 지정교육기관 주관으로 운영)
  · 집합·방문교육 운영 시 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은 별도 운영(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은 함께 실시 가능)

- (사이버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정신인권 교육홈페이지(hrp.kohi.or.kr) 또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교육 홈페이지(www.ncmh.go.kr:2450/home/main.do) 공지사항에서 교육 대상 및 교육 일정 확인 후 교육 이수

[2026년 사이버교육 이수 가능자]

▪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 **(의료인 등) 의료인, 사회복지사, 심리사, 치료사, 치료보조원(보호사), 간병인은 당해연도 짝·홀수를 기준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출생연도를 대입하여 일치하는 자만 이수 가능**

예시1) 2026년인 경우, 1990년 출생자 사이버교육 이수 가능, 1991년 출생자 사이버교육 이수 불가
예시2) 2027년인 경우, 1990년 출생자 사이버교육 이수 불가, 1991년 출생자 사이버교육 이수 가능

- **(행정분야, 조리실, 시설관리 등 진료 관련부서 외 종사자) 출생연도 관계없이 사이버 교육 이수 가능**
- **(당해연도 신규 채용 종사자)** 출생연도 관계없이 사이버교육 이수 가능
- **(당해연도 3개월 이상 휴가 또는 휴직자)** 종사자 중 출산·육아·질병 등으로 당해연도 3개월 이상 휴가 또는 휴직할 경우 출생연도 관계없이 사이버교육 이수 가능

▪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출생연도 관계없이 모든 종사자 사이버 교육 이수 가능**

▪ **당해연도 11월~12월 신규 채용자 또는 발령자는 익년 3월까지 인권교육(집합 또는 사이버)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익년도에 총 2회의 교육을 이수해야함**

예시) 2025년 11~12월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입사자의 경우 26년 3월까지 인권교육 이수(집합 또는 사이버)하고, 26년 교육대상 여부 확인 후 집합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이수

○ 교육신청

- 지정교육기관 교육 일정 확인 후 기관별 신청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정신인권 교육홈페이지(hrp.kohi.or.kr) 공지사항을 통해 지정교육기관별 교육 일정 확인 가능

-「인권교육 참가 신청서」[양식1]를 작성하여 해당 교육기관에 접수

- 교육기관이 제시한 다른 접수 방법이 있을 경우 그 방법에 따름

Ⅳ 인권강사 교육

1 인권강사 양성교육

○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강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이수 후 활동이 가능함

○ 인권교육 지정교육기관장 및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은 강사양성교육 실시 전 인권교육 강사에 적합한 자를 보건복지부에 추천[양식4]

○ **인권교육 강사 추천 대상자**

1)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으로 인권교육 강사활동에 적합한 자

2) 정신건강증진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

* 시·도 및 시·군·구의 정신보건담당 공무원이 강사양성교육을 신청하려면, 광역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함

3)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 제1호의 기관에서 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인권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

[해당 기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제1호

- 국가인권위원회
-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
- 정신건강증진 또는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 · 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 법인 · 단체

4) 위 해당 기관 외 소속의 정신과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 또는 보건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

5) 정신장애인 가족(당사자 포함) 중 가족강사로 활동 경험이 있는 자

○ 교육대상: 지정교육기관장의 추천 후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은 자

○ 교육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교육시간: 18시간 이상

○ 교육방법: 집합교육

○ 교육신청: 별도 공지(홈페이지 및 공문으로 공지)

○ **인권교육 강사 활동유지 조건**

- 강사양성교육을 이수 후 인권강사로 활동 할 수 있으며, 인권강사는 추천을 받은 해당 지정교육기관 인권강사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강사활동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실제 강사 활동(2년간 1회 이상)을 하고,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강사활동 인정 범위: 지정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인권 강의, 그 외 종사자, 당사자, 당사자 가족 대상으로 한 강의

* 보수교육 미 이수에 대한 정당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둠

* 강사가 공무원인 경우, 강사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그 직무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만 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강사활동유지기간은 통상 강사양성교육을 받은 당해 연도 말까지이며,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이수 당해연도 1. 1. ~ 12. 31.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함.

2 인권강사 보수교육

○ 교육대상: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강사

- 2025년도 강사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을 이수한 인권강사

○ 교육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교육시간: 6시간 이상

○ 교육방법: 집합교육

○ 교육신청: 별도 공지(홈페이지 및 공문으로 공지)

* 강사양성교육 또는 강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Ⅴ 인권교육 지정교육기관

1 인권교육 지정교육기관 역할

○ 인권교육 담당자 지정 및 역할

- 지정교육기관은 1명의 인권교육 책임자와 담당자를 각각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 지정교육기관의 인권교육 책임자와 담당자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실시하는 상·하반기 워크숍(역량강화교육 등)에 1명 이상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 인권교육 연간계획 수립 및 교육실적 제출

- 지정교육기관은 매년 2월 15일까지 해당지역의 연간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보건복지부에 취합된 연간 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함

- 지정교육기관은 인권교육 운영 및 강사운영 실적을 연2회(상·하반기*)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취합된 실적을 취합하여 익년 1월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여야 함

  * 상반기 : 6월 말일까지/ 하반기 : 12월 말일까지 제출

-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당해연도 실시한 인권교육 (강사양성 및 보수교육 등) 운영 결과를 익년 1월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여야 함

○ **인권강사 관리**

- 해당 권역의 인권 강사를 추천·관리할 수 있으며, 강의 실적이 미비하거나 기타 문제 발생 시 강사 활동이 취소될 수 있음

  * 인권 강사 추천([양식4] 작성 후 보건복지부 제출)

○ **교육실시**

- 집합교육 운영 시 계획인원 대비 모집인원이 적어 운영이 어려울 경우 교육을 취소할 수도 있음
- 2개 이상의 피 교육기관을 연계하여 방문교육 실시 가능
- 교육기관은 집합교육(집합 또는 방문) 개설시 4시간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 지정교육기관은 의무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충분히 이수할 수 있도록 과정 개설 및 운영해야 함 (연 최소 2회 이상)

○ **교육 관리**

- 지정교육기관은 교육 미이수자, 참여 태도 불량자, 교육 진행 방해자 등 교육진행의 어려움을 초래한 자에 대하여 교육 중간에 귀가시키거나,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강사에게 일정한 금액의 강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각 지정교육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함

  ** 강사가 공직자인 경우 [붙임2]의 사항을 숙지하여 적용함
- 지정교육기관 내부 직원교육에 종사자 인권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할 때는 해당 교육 실시 전에 “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에 의한 인권교육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
- 연간 교육계획이나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육 관리 담당자에게 알려 수정된 교육계획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 **교육 이수증 발급 및 관리**

- 교육기관 담당자는 교육대상자의 **교육 이수 관리를 철저히 해야하며, 모든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수료 처리를 할 수 없음**
- **지정교육기관은 인권교육 이수자에게 교육 이수증[양식3]이나 자체 수료증 양식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 피교육기관별 이수 통보가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이수자 명단을 첨부하여야 함(소속, 직위, 성명, 교육 종류, 이수일자 등 표기)
- 지정교육기관은 아래의 사유로 이수자가 발급 또는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 수료증을 배부할 수 있음

※ 교육 이수증 발급 사유

1) 해당연도 교육 이수한 자 중 이직·휴직·기타사유로 인하여 이전 직장에서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2) 피교육기관의 폐업 등으로 교육 이수증을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3) 기타 지정교육기관이 인정한 경우

<인권교육 지정교육기관('26.1월 기준)>

권역(기관수)	보건복지부 지정 인권교육 지정교육기관
서울·경기·인천 (8)	국립정신건강센터, 서울은평병원,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사)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강원(2)	국립춘천병원, 강원도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충북(2)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대전·세종·충남 (5)	국립공주병원,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세종특별자치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산·울산·경남 (4)	국립부곡병원,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산시립정신병원, 울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대구·경북 (3)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대구정신병원, 경상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
광주·전라 (5)	국립나주병원,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마음사랑병원, 천주의성요한병원
제주(1)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국립부곡병원은 대구 · 경북 지역 교육 지원**

2 인권교육 지정교육기관 지정 · 운영

○ 지정절차

공고		접수 및 심사		지정
인권교육 지정교육기관 추가 지정 공모 (보건복지부)	⇨	신청서 접수 및 심사 (보건복지부)	⇨	지정교육기관 지정 공지 (보건복지부)

○ 지정조건

- 정신보건 및 교육의 전문성, 기관의 안정성, 인권교육 계획의 충실성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교육수행 능력을 판단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 권역별 안배를 감안하여 지정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이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교육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실적 등을 감안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 제4항)

3 지정교육기관 모니터링

○ 보건복지부는 인권교육 지정교육기관의 교육 추진현황 및 점검, 교육운영기관 및 교육생 의견취합 등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거나 교육실적의 중간보고를 받을 수 있음

-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기획·운영 적합성 점검을 위해 교육실시 전반(교육내용·구성, 교육방법, 교육생 근태관리, 교육시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음

VI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의무와 역할

○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의 의무**

- 시설의 장은 반드시 인권교육을 이수하여야하며, 종사자가 인권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참여를 보장하여야 함

- 종사자가 인권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교육 참여 시간과 이동시간을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함

  * 근무 시간 인정 범위: 집합교육 전후의 이동시간 및 교육 이수시간

- 종사자가 인권교육에 참여할 경우 재택근무, 교육출장, 시간 외 근무 등을 통해 근태를 처리해 주어야 함

- 실무자의 인권교육 이수에 필요한 경비(교육비, 일비, 교통비 등)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 **교육이수 실적보고서 제출**

-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은 수료증 사본과 교육이수자 명단을 포함한 인권교육 이수실적보고서[양식2]를 작성하여 익년 1월 중 관할 시·군·구에 제출

Ⅶ 기타사항

1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 **관할지역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이수 실적 결과보고**

- 시군구에서는 관할지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인권교육 이수 실적을 보고받고 확인하여 그 취합 결과를 시도로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익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시군구 결과를 취합하여 제출 (미이수 기관 명시)

* 시·군·구청장은 교육 이수 실태 확인 후 증빙자료는 자체 보관하며, 교육 이수현황을 작성하여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로 제출

** 인권교육 실시결과는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및 인증에 반영

○ 지방자치단체는 요청이 있는 경우, 혹은 자체 계획에 따라 지정 교육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인권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교육을 위한 시설 편의와 강사지원을 할 수 있음

2 학술대회 및 직능별 보수교육을 통한 인권교육

○ 각종 학회나 협회에서 운영하는 학술대회 또는 직능별 보수교육, 기타 정기총회 및 워크숍 일정과 함께 인권교육을 기획하여 운영할 경우,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전협의 필요**

○ 인권교육(4시간 이상)은 별도의 시간에 편성·운영해야 함

* (예)직능단체 보수교육을 인권교육을 겸하여 운영할 경우, 보수교육이 8시간이라고 하면, 전체 보수교육 시간은 인권교육 4시간을 포함한 12시간이 되어야 함

○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해 운영되는 인권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실시기관으로부터 실시 보고를 받고 인권교육 수료증(또는 이수증)을 발급함

3 교육비 징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정교육기관이 인권교육을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음

○ 지정된 지정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교육에 필요한 경비(강사비, 교재 제작비, 장소 임대료 등)를 징수할 수 있음

4 인권교육 홈페이지

○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정신인권 교육홈페이지(hrp.kohi.or.kr)에 교육대상자가 각 기관의 인권교육 계획과 교육 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그 외 인권강사 명단, 관련 법령 및 인권교육 정보, 강의 참고자료 등은 별도 방법을 이용하여 각종 정보를 공유

양식 1 **인권교육 참가 신청서**

인권교육 참가 신청서(통합)

<table>
<tr><td rowspan="2">인권
교육</td><td>지정교육
기관명</td><td></td><td>교육종류
(해당칸에
○표시)</td><td>1. 시설장 교육
2. 종사자 교육
2-1. 집합교육
2-2. 방문교육</td></tr>
<tr><td>교육장소</td><td></td><td>교육일</td><td>20 . . .</td></tr>
<tr><td rowspan="4">신청인
(기관)</td><td>시 설 명</td><td>* 허가(신고)증 상의 명칭 기재</td><td rowspan="2">시설종류
(해당칸에
○표시)</td><td rowspan="2">_____1. 정신의료기관
_____2. 정신요양시설
_____3. 정신재활시설</td></tr>
<tr><td>소재지</td><td>(시도) _____(시군구)_____</td></tr>
<tr><td>강사·운영자
교육대상자</td><td>성명 :
직위 :</td><td>종사자
교육대상자</td><td>외 ( )명
*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명단 붙임</td></tr>
<tr><td>연락처</td><td colspan="3">전화번호 : 핸드폰 :
주소 :
이 메 일 :
*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시설 내에서 참가를 주관(연락)하는 자를 기재합니다.</td></tr>
</table>

신청기관(인)은 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귀 기관에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지정교육기관의 장 귀하

* 붙임 명단 양식

번호	교육종류	과정명	교육일	성 명	직위	직종	비고
1	집합교육	OO과정	6.2.	홍길동	운영자	의사	
2	집합교육	OO과정	6.2.	장길산	사회사업과장	임상심리사	
3	집합교육	OO과정	6.2.	ooo		간호사	

양식 2 **인권교육 이수실적 보고서(시·도 및 시·군·구 보고양식)**

20 년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이수 실적 보고서

○ 이수실적

기관정보				구분	대상 인원	이수 인원	교육 시간	교육 종류[2]	실시기관
시도	시군구	종류[1]	시설명						
서울 (강남구)		정신의료 기관	00정신병원	**시설장**	0명	0명	4시간	집합 교육	한국보건복지 인재원
				종사자	0명	0명	4시간	사이버 교육	한국보건복지 인재원
					0명	0명	4시간	방문 교육	국립정신건강센터
					0명	0명	4시간	집합 교육	서울시정신건강 복지센터
계					**000명**	**000명**			

직종별 교육이수 현황		
구분	대상 인원	이수 인원
시설장	0명	0명
의사	0명	0명
간호사	0명	0명
사회복지사	0명	0명
임상병리사	0명	0명
간호조무사	0명	0명
보호사	0명	0명
행정	0명	0명
기타	0명	0명
계	**000명**	**000명**

※ 1) 시설종류: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 2) 교육종류: 집합교육, 방문교육, 사이버교육

【붙임】 피교육자 명단

○ 피교육자 명단*(의무교육대상자만 기입하며, 제출하는 교육수료증과 일치해야 함)*

연번	부서	직종	성명	교육이수방법	비고
1	3병동	간호사	000	집합/방문/사이버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양식 3 인권교육 이수증

제(기관부여번호) - 호 (지정교육기관 보관용)

인 권 교 육 이 수 증

소속 기관	기관명	*개설허가신고증 명칭	소재지	*시군구명칭
	종별	□ 정신의료기관 □ 정신요양시설 □ 정신재활시설 □ 기타 ( )		
교육생	성명			
교육 이수 내용	□ 교육 종류: □ 이수시간: 4 시간		교육기관 확인 ※ 확인자 서명	

위 사람은 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 동법 시행규칙 50조에 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을 상기와 같이 이수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발급기관명)(직인)

제(기관부여번호) - 호 (교육 이수자 보관용)

인 권 교 육 이 수 증

소속 기관	기관명	*개설허가신고증 명칭	소재지	*시군구명칭
	종별	□ 정신의료기관 □ 정신요양시설 □ 정신재활시설 □ 기타 ( )		
교육생	성명			
교육 이수 내용	□ 교육 종류: □ 이수시간: 4 시간		교육기관 확인 ※ 확인이 없으면 무효임	

위 사람은 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 동법 시행규칙 50조에 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을 상기와 같이 이수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발급기관명)(직인)

※ 참고 사항

○ 교육종류: 정신건강증진시설장 인권교육, 종사자 인권교육 중 1개를 택하여 기재

○ 이수시간: 실제 이수 시간 기재

○ 교육기관 확인: 담당자 서명

○ 발급기관명 및 직인 : 해당 지정교육기관 명칭 및 직인

양식 4 **인권강사 추천서**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강사 추천서

추천대상자	성 명		소 속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기관주소)		
		(E-MAIL)		
추천기관명				
추천기관 담당자명		연락처	(사무실) (E-MAIL)	
추천구분 (해당사항☑표시)	□ 인권교육 담당 공무원 □ 시설장 □ 정신건강전문요원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관련학(심리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사회사업학 또는 보건학) 교수 □ 정신장애인 당사자 또는 가족 강사 □ 기타			
관련분야 강의경력				
추천사유				

상기 대상자를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강사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기관의 장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붙임 1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관련 법령

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인권교육)

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을 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인권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인권교육의 시간·대상·내용·방법,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등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50조(인권교육)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인권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환자의 인권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나.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보호에 관한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라.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사항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인권교육 시간: 매년 4시간 이상
3. 인권교육 방법: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법인·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일 것
   가. 국가인권위원회
   나.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
   다. 정신건강증진 또는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라.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마.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권교육강사 양성교육 등을 이수한 사람(이하 "인권교육강사"라 한다)을 1명 이상 둘 것
   가. 최근 3년 이내에 인권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나. 정신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다. 제1호 각 목의 기관에서 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③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붙임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2018. 1. 17. 일부개정)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개정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

구 분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1시간당 상한액	40만원 (직급별 구분 없음)	100만원
사례금 총액한도	60만원 ※ 1시간 상한액+1시간 상한액의 50%	제한 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고시(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는 폐지

붙임 3 인권교육 지정교육기관 현황

연번	시·도	기 관 명	지정 년도	주 소
1	충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01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2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	2009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 127
3	전남	국립나주병원	2009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328-31
4	경남	국립부곡병원	2009	경남 창녕군 부곡면 부곡로 145
5	강원	국립춘천병원	2009	강원 춘천시 동산면 영서로 824
6	충남	국립공주병원	2009	충남 공주시 고분티로 623-21
7	서울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2009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 90
8	전북	전북도 마음사랑병원	2009	전북 완주군 소양면 소양로 465-23
9	광주	천주의성요한병원	2009	광주 북구 태봉로 32
10	부산	부산시립정신병원	2015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39번길 104-36
11	대구	대구정신병원	2015	대구 달성군 화원읍 명천로 58
12	서울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2009	서울 종로구 동숭3길 40(일석기념관) 3,4층
13	인천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009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로 229 인천IT타워 20층
14	경기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2009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 69 도의료원 2층
15	광주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013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46 KT 우산빌딩 7층
16	대전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013	대전 중구 대종로488번길 9
17	충북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013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67 지오빌딩 2층
18	충남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013	충남 홍성군 홍북읍 의향로273 5층
19	전북	전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013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115 나눔둥지타운 407호
20	부산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015	부산 남구 수영로 299 루미너스타워 12층
21	대구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015	대구 서구 평리로 157 대구의료원 생명존중센터 3층
22	제주	제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0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23	강원	강원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015	강원 춘천시 후석로 42, 4층
24	경북	경상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	2021	경북 경주시 광중길24 스타타워 402호
25	울산	울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021	울산 남구 화합로 105, 2층
26	세종	세종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024	세종시 시청대로 583, 반곡종합복지센터 2층
27	서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09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522호
28	서울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2009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14 한국사회복지회관 1106호
29	대전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2009	대전 중구 대종로 488번길 9
30	서울	(사)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2015	서울 중구 만리재로 193 서울역디오빌 216호